

## **A Note on Translations**

This document was originally prepared in English by a working group of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and was adopted by IBA Council Resolution.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e English language versions and the translations into any other language,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shall prevail.

*The IBA would like to acknowledge the work of Kevin Kim and Prof Keechang Kim in respectively preparing and reviewing this text.*



the global voice of  
the legal profession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4th Floor, 10 St Bride Street  
London EC4A 4AD  
United Kingdom

Tel: +44 (0)20 7842 0090  
Fax: +44 (0)20 7842 0091

[www.ibanet.org](http://www.ibanet.org)

국제중재조항  
작성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IBA) 지침

2010.10.7.

국제변호사협회 상임위원회(IBA Council) 결의로 채택

국제변호사협회(IBA)

**국제변호사협회(IBA)**

10th Floor, 1 Stephen Street

London W1T 1AT

United Kingdom

전화: +44 (0) 20 7691 6868

팩스: +44 (0) 20 7691 6544

[www.ibanet.org](http://www.ibanet.org)

ISBN: 9780948711213

이 저작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국제변호사협회(IBA)가 보유한다.

©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2010

본 저작권 통고로 보호되는 이 간행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 간행물의 어떠한 부분도 저작권자의 서면 허락 없이는, 복사, 녹음을 포함한

전자적·기계적 수단이나 정보 저장 및 검색 시스템, 기타 어떠한 형태로도  
복제되거나 활용할 수 없다.

## 목차

전담반 구성원

i

IBA 증재위원회 소개

iii

머리말

1

지침

3

# 국제중재조항작성 전담반 구성원

Paul Friedland

*Chair*

*White & Case LLP*

*New York, USA*

R Doak Bishop

*King & Spalding LLP*

*Houston, USA*

Karim Hafez

*HAFEZ*

*Cairo, Egypt*

Adriano Juca

*Construtora Norberto Odebrecht*

*Sao Paulo, Brazil*

Carole Malinvaud

*Gide Loyrette Nouel A A R P I*

*Paris, France*

Sundaresh Menon

*Rajah & Tann LLP*

*Singapore, Singapore*

Jean-Claude Najar

*GE Capital*

*Paris, France*

William W Park

*Boston University*

*Boston, USA*

Anne-Veronique Schlaepfer

*Schellenberg Wittmer*

*Geneva, Switzerland*

Eduardo Silva Romero

*Dechert LLP*

*Paris, France*

Stephen E Smith

*Lockheed Martin Space Systems Company*

*Denver, USA*

Matthew Weiniger

*Herbert Smith LLP*

*London, UK*

Damien Nyer (Secretary)

*White & Case LLP*

*New York, USA*

# IBA 중재위원회 소개

국제변호사협회 법률실무분야 소속 위원회로 설립된 중재위원회는 국제분쟁의 중재와 관련된 법률, 관행 및 절차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고, 현재 90여 개국, 2,3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회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간행물 및 회의를 통하여 국제중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중재의 활용을 촉진하며 그 효과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재위원회는 상임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담반을 설치한다. 이 국제중재조항 작성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지침 발행 당시, 중재위원회는 투자협약에 관한 소위원회, 이해상충에 관한 소위원회,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와 국제중재에서의 변호사윤리 전담반 및 국제중재조항 작성 전담반 등 2개의 전담반을 두고 있다.

# 머리말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은 전세계적으로 법률업무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거의 모든 경우 중재절차의 배경에는 중재합의가 있고, 중재합의를 통하여 당사자들은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채택하고자 하는 중재절차를 명시한다. 이를 고려할 때, 당사자들의 필요와 희망을 반영하는 유효한 중재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중재절차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국제중재조항 작성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지침(“IBA중재조항지침”)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를 명료하게 규정한 유효한 중재조항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 지침은 모범적인 현행 국제관행에 대해 본 협회가 이해한 바를 반영하고, 국제중재조항 작성자들에게 기본적인 틀과 세부 규정내용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IBA중재조항지침은 당사자들이 내려야 하는 세부적인 선택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유효한 조항의 필수적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재절차에서 어떠한 부분을 미리 결정할 수 있는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IBA중재조항지침은 당사자들에게 가능한 선택사항 및 피하여야 할 함정에 대해 알려준다.

IBA중재조항지침은 중재합의가 전형적인 양자합의를 벗어나 다수 당사자들



및/또는 일련의 관련 계약들이 연관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중재조항 작성 시의 복잡한 문제들도 다루고 있다. 그 결과, IBA중재조항지침은 단순 명료한 중재조항은 물론 매우 복잡한 중재조항에도 적용하기에 적합하며, 나아가 그 중간영역에 있는 어떠한 조항에도 적용될 수 있다.

후술하는 서론에서 설명할 바와 같이, IBA중재조항지침은 사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동 지침은 중재조항의 필수적 요소에 대한 기본지침에 이어 ‘추가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는 요소, 다층적 분쟁해결조항, 다수당사자 중재조항 및 다수계약 관련 거래에 적합한 중재조항을 모두 다루고 있다. 각 지침과 함께 구체적인 권고조항 및 해당 지침에 대한 해설도 제공하고 있다.

중재위원회가 과거 발행한 기타 규정 및 지침과는 달리, IBA중재조항지침은 중재전문가는 물론, 사내변호사 및 계약서 작성 업무를 일상적으로 담당하지만 중재의 복잡미묘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기업법무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IBA중재조항지침 담당 전담반 구성원들의 명단은 앞에서 게시된 바와 같다. 각 구성원의 노고와 훌륭한 성과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IBA중재조항지침을 간행함으로써 이들은 중재조항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었다.

본 IBA증재조항지침은 2010.10.7. 국제변호사협회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채택되었다. 이 지침은 영문으로 간행되었고, 여러 다른 언어로 번역될 예정이다. 이 지침의 사본은 국제변호사협회에 주문 신청하거나, 또는 <http://tinyurl.com/iba-Arbitration-Guidelines>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Guido S Tawil**

**Judith Gill, QC**

*중재위원회 공동의장*

2010.10.7

# 지침

## 목차

I. 서론 .....	6
II. 기본 작성지침 .....	6
지침 1: 당사자들은 기관중재 및 임의중재 중 양자택일하여야 한다. ....	6
지침 2: 당사자들은 중재규칙을 선택하고, 동 중재규칙을 위해 권고된 표준조항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좋다. ....	7
지침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은 중재대상 분쟁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의 범위를 폭넓게 정하는 것이 좋다. ....	10
지침 4: 중재지는 당사자들이 선정하는 것이 좋다. 중재지 선정은 현실적 요인 및 법률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	12
지침 5: 당사자들은 중재인 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	13
지침 6: 당사자들은 중재인들의 선임 및 교체 방법을 명시하고, 임의중재를 선택할 경우 중재인 선정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 ....	14
지침 7: 당사자들은 중재에 사용될 언어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	17
지침 8: 보통의 경우 당사자들은 계약 및 그 후 분쟁에 대한 준거법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	18
III. 추가적 선택사항에 대한 작성지침 .....	19
선택안 1: 임시적 조치 및 보전적 조치에 관한 중재판정부 및 법원의 권한. ....	19
선택안 2: 문서제출명령 .....	21
선택안 3: 비밀유지문제 .....	23
선택안 4: 비용 및 수수료의 배분 .....	24

선택안 5: 중재인의 자격..... 26

선택안 6: 기한..... 27

선택안 7: 중재의 종국성..... 28

**IV. 다층적 분쟁해결조항 작성지침..... 29**

다층적 조항 지침 1: 특정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예. 서면요청)으로 개시되는 협상기간 또는 조정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이 경과되면 어느 당사자든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점을 조항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29

다층적 조항지침 2: 조항은 중재를 의무사항이 아닌 가능사항으로 규정하는 합정을 피하여야 한다. .... 30

다층적 지침 3: 조항은 협상 또는 조정에서 회부될 분쟁과 중재에 회부될 분쟁을 동일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30

**V. 다수당사자 중재조항 작성지침..... 33**

다수당사자 지침 1: 조항은 다수당사자의 존재가 중재판정부를 선임함에 있어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 33

다수당사자 지침 2: 조항은 다수당사자의 존재로부터 발생하는 절차적 복잡성(중재절차참가 및 당사자의 추가)을 다루어야 한다..... 34

**VI. 다수계약 중재조항에 대한 작성지침..... 37**

다수계약 지침 1: 상호 관련된 계약들의 중재조항들은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 37

다수계약 지침 2: 당사자들은 상호 관련된 계약들에 따라 각각 개시된 중재절차들의 병합에 관하여 규정할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38

## I. 서론

1. 이 지침의 목적은 국제중재조항을 작성함에 있어 간결하고 손쉬운 접근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잘못 작성된 중재조항은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 및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지침을 참조함으로써, 계약작성자는 중재조항이 유효하고, 계약작성자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 지침은 (서론 이외에) 5개의 장(section)으로 구분된다. 제1장은 중재조항 작성 시 해야 할 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제2장은 중재조항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추가적 선택사항을 다룬다. 제3장은 협상, 조정 및 중재를 규정하는 복수단계 분쟁해결 조항을 다룬다. 제4장은 다수 당사자 계약에서의 중재조항 작성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제5장은 다수의 관련된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중재조항을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II. 기본 작성지침

*지침 1: 당사자들은 기관중재 및 임의중재 중 양자택일하여야 한다.*

*해설:*

3. 중재조항을 작성하는 당사자들이 직면하는 첫 번째 선택은 기관중재와 임의중재 중 어느 쪽을 택하느냐이다.
4. 기관중재(또는 기관 관리 중재)에서는, 중재기관이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대신 중재절차의 진행을 돕는다. 중재기관은 심리 준비 및 중재인들과의 연락, 중재인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과 같은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일방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중재인을 선정하고, 중재인에 대한 회피결정, 중재판정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기관은 당사자들의 분쟁에 대해 본안심리는 하지 않는다. 본안심리는 전적으로 중재인들에게 맡겨진다.

5. 기관중재는 국제중재 경험이 적은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재기관은 효율적인 중재절차의 진행에 도움을 주는 상당한 절차적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중재조항을 작성할 때 예견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교적 저렴한 관리 수수료를 지급할 정도의 가치가 충분한 경우가 많다.
6. 당사자들이 기관중재를 선택하는 경우, 국제중재사건을 담당할 역량이 충분하고 명성이 있는 기관을 찾는 것이 좋다. 주요 중재기관들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중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중재기관이 소재한 도시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될 필요는 없다.
7. 임의중재(또는 기관 불개입 중재)에서는, 중재절차 진행의 부담은 전적으로 당사자들과, 중재인들이 선정된 후에는, 중재인들의 몫이다. 아래 설명과 같이(지침2), 당사자들은 임의중재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정하여 작성된 중재규칙을 선택함으로써 중재절차 진행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임의중재에서는 어떠한 중재기관도 중재절차의 진행에 관여하지 않지만, 아래 설명과 같이(지침6),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중재인을 선정하고 결원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 제3자(“중재인 선정기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지침 2: 당사자들은 중재규칙을 선택하고, 동 중재규칙을 위해 권고된 표준조항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좋다.*

*해설:*

8. 중재조항을 작성하는 당사자들이 직면하는 두 번째 선택은 중재규칙의 결정이다. 선택한 중재규칙은 중재절차를 위한 절차적 토대를 제공한다. 확립된 규칙을 당사자들이 원용하지 않는 경우,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점들을 중재조항 자체에서 해결해야만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만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9. 당사자들이 기관중재를 선택할 경우, 중재규칙은 선택된 중재기관의 것과 항상 일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의중재를 선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중재규칙 등 기관에 의하지 않은 중재를 위해 개발된 중재규칙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중재규칙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중재인 선임을 위한 중재인 선정기관으로서 특정 중재기관(또는 기타 독립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아래 31항 및 32항 참조).
10. 중재규칙이 선택되면, 해당 중재규칙을 제정한 기관 또는 조직이 권고하는 표준조항을 출발점으로 삼아 중재조항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당사자들이 표준조항에 내용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 조항의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표준조항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들은 중재합의의 유효성, 집행가능성 및 효과발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중재가 당사자들간 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배타적인 해결방식이므로 명확히 확립되고, 중재기관 및 규칙의 정확한 명칭이 사용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그 결과 분쟁 발생 시 혼동이나 절차지연 시도를 피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표준조항에 추가된 내용이 선택된 중재규칙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권고조항:*

11. 기관중재조항의 경우, 선택된 중재기관이 제안한 표준조항을 중재조항 작성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 중재기관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중재기관은 특정 업계(해운업 등)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을 고안하였다.
12. 임의중재에서 중재규칙이 지정된 경우, 그 중재규칙을 발행하는 조직의 표준조항을 중재조항 작성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 조직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13. 중재규칙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계약당사자들이 임의중재에 합의하는 경우, 다음 조항이 두 당사자간 계약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계약의 존부, 효력,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서 기인하거나,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장소는 [도시, 국가]로 한다.

중재에 사용될 언어는 [...]로 한다.

중재는 신청인이 제출하고 피신청인이 교부 받은 중재신청서에 의하여 개시된다. 중재신청서에는 청구의 성격 및 당사자가 구하는 구제수단이 명시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이 중 첫 번째 중재인은 중재신청서에서 신청인이 선정한 자, 두 번째 중재인은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선정한 자, 의장중재인 역할을 수행할 세 번째 중재인은 두 번째 중재인 선정 후 30일 이내에 양당사자가 선정한 자로 한다. 전술한 기간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지정된 중재인 선정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결원이 발생하면, 결원된 중재인이 애초에 선정되었던 방식에 의해 중재인이 충원된다. 다만,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종결된 이후 결원이 발생한 경우, 나머지 2인의 중재인이 중재를 계속 진행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인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지정된 중재인 선정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따라야 할 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들과 협의 후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존재, 유효성 또는 효력에 관한 이의를 포함하여



중재판정부 스스로의 관할권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한을 보유한다. 이러한 결정은 중재판정부가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관할권에 대한 예비적 결정으로 또는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에서 내릴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다수결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수결이 불가능한 경우, 의장중재인이 단독중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듯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일방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중재인으로서 중재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참가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그 불참 또는 참가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나머지 2인의 중재인이 결정한 경우, 중재를 계속 진행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당사자들에 대하여 종국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당사자들은 중재판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일체의 불복수단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는 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중재판정의 집행은 관할을 가진 어떤 법원에서건 구할 수 있다.

*지침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은 중재대상 분쟁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의 범위를 폭넓게 정하는 것이 좋다.*

*해설:*

14. 중재조항의 범위는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종류 및 범위를 의미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조항의 범위는 “해당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뿐 아니라,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까지 포함하도록 폭넓게 정의되는 것이 좋다. 보다 협소하게 규정할 경우 해당 분쟁이 중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15.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일부 분쟁을 중재조항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에 따라서는 가격 결정 및 기술 관련 분쟁은 중재가 아닌 전문가에 의한 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저작권자나 특허권자는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강제처분이나 금지처분을 구하거나, 또는 지적재산권의 귀속관계나 유효성에 관한 결정을 법원에 맡길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자 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것이다.

16. 중재조항이 신중하게 작성되더라도, 분쟁의 일부를 중재조항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경우 특정 분쟁이 중재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본안전 논쟁을 피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하나의 청구로 중재조항의 범위에 속하는 쟁점과 속하지 않는 쟁점이 모두 제기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예를 들자면, 라이선스 계약 하의 지적재산권의 귀속관계나 유효성에 대한 분쟁에는 대금지급 불이행, 계약위반 등의 쟁점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분쟁의 일부를 중재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되면, 다루기 어려운 관할권 관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권고조항:*

17. 당사자들이 선택한 중재규칙과 연계된 표준조항을 사용함으로써 중재조항의 범위가 폭넓게 규정되도록 보장받을 수 있다.
18. 당사자들이 표준조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 조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본 계약의 존부, 효력,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서 기인하거나,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택된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한다.

19.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당사자들이 중재대상 분쟁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본 계약이 중재 대상에서 구체적으로 제외하는 사항 외에는, 본 계약의 존부, 효력,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서 기인하거나,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택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한다.

다음 사항은 중재 대상에서 구체적으로 제외된다: [...].

지침 4: 중재지는 당사자들이 선정하는 것이 좋다. 중재지 선정은 현실적 요인 및 법률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해설:

20. 중재지 선정에는 중립성, 중재심리 시설의 이용가능성, 증인 및 증거와의 근접성, 언어 및 문화에 대한 당사자들의 친숙도, 자격을 갖춘 중재인들이 해당 중재지 중재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등 현실적인 요인들이 당연히 고려된다. 중재지를 어디로 하느냐는 어떤 경력과 자질의 중재인이 임명될 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당사자들이 선정하지 않은 중재인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장소의 편리함이 결정적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지정된 중재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만나 심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 중재지는 중재 절차의 법적 근거지이다. 선택된 중재지의 법제도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각국의 중재법 및 일부 중재규칙에 의하면 중재지 선택이 중요한 법적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중재지가 계약 및 본안에 관한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아래 42항 - 46항 참조), 중재인의 권한 및 중재절차의 사법적 통제 등 중재 절차에 관한 준거법(중재법 또는 *lex arbitri*)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중재지 소재 법원은 (중재인의 선임 또는 해임, 가처분 또는 보전처분의 명령, 증거조사 지원 등의) 조력을 제공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으며, (중재절차의 중지를 명령함으로써) 중재진행에 간섭할 수도 있다. 또한, 중재지 법원은 중재의 종결시점에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를 심리할 권한을 갖는다; 중재지에서 취소된 중재판정은 다른 관할지에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중재판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적용되는 국제협약에 따라 중재지는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은 (i)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의 체약국이고 (ii) 법률이 중재에 우호적이고, 해당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해 중재를 허용하며 (iii) 중재절차에 우호적인 공정한 판정을 내려온 전력이 있는 법원이 소재한 관할지에 중재지를 위치시키는 것이 좋다.

23. 중재지를 명시하지 않은 중재조항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유효하다. 당사자들이 선택한 중재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재기관이, 중재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인들이 분쟁 발생 후 당사자들이 중재지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을 위해 중재지를 선택한다(그러나 임의중재에서는 중재인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중재지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어떤 국가의 법원이 도움을 주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중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당사자들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결정을 남에게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24. 당사자들은 중재조항에 ‘심리’의 장소가 아니라, ‘중재지’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이 심리 장소만을 명시한다면 법률 및 조약의 적용의 기준이 되는 ‘중재지’를 지정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중재조항에 심리장소를 지정하게 되면, 중재인이 편의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당사자들이 박탈하게 된다.

*권고조항:*

25. 중재장소는 [도시, 국가]로 한다.

*지침 5: 당사자들은 중재인 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해설:*

26. 당사자들은 중재인의 인원수(일반적으로 1인 또는 3인, 항상 홀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중재인의 수는 중재절차에 소요되는 총비용 및 기간에 영향을 미치며 중재절차의 질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3인판정부에 의한 중재절차는 어쩌면 불가피하게 단독중재인에 의한 절차보다 길어지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3인판정부는 복잡한 사실 및 법률 쟁점을 다루기에 보다 적합 수 있고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결과에 대한 위험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당사자들은 스스로 중재인을 선정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중재절차에 대하여 강화된 통제력을 갖게 되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

27.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그리고 분쟁이 발생하고 난 후에 이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중재기관이 있다면 중재기관이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신청금액과 사건의 복잡함을 고려하여 중재인의 수를 결정한다. 임의중재의 경우 선택된 중재규칙이 있다면, 그 중재규칙에,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을 경우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가 명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당사자들이 그러한 중재규칙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중재조항 자체에 중재인의 수를 명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28. 당사자들은 분쟁이 발생한 후에 1인 또는 3인의 중재판정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일부러 중재인의 수를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분쟁이 발생한 후에 그러한 선택의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장점이기는 하나, 특히 임의중재에서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단점도 발생한다.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중재조항 자체에 중재인의 수를 미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고조항:*

29. 중재인의 수는 [1인 또는 3인]으로 한다.

*지침 6: 당사자들은 중재인들의 선임 및 교체 방법을 명시하고, 임의중재를 선택할 경우 중재인 선정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

*해설:*

30. 기관중재 및 임의중재의 중재규칙 모두 중재인 선임과 교체에 대한 기본절차를 규정한다. 그러한 규칙을 원용한 경우 당사자들은 규칙에 명시된 기본절차에 의존하는데 만족할 수도 있고, 대안으로 다른 방법에 합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많은 규칙은 3인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을 나머지 2인의 중재인 또는 기관이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당사자들은 1차적으로

스스로 의장중재인의 선임을 시도하는 것을 선호한다. 기본절차와 달리 규정하고자 한다면, 당사자들은 해당 중재규칙의 용어에 부합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기관 규칙들 중에는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지명(nominate)”하되 당해 기관만이 중재인을 “선임(appoint)”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들이 중재규칙을 원용하지 않았을 경우 중재조항 자체에 중재인들의 선임 및 교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31. 임의중재의 경우 중재인 선정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기관중재 조항을 작성할 경우와 임의중재 조항을 작성할 경우 간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기관중재에서는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선임이나 교체에 실패하더라도 기관이 중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임의중재에는 그러한 기관이 없다. 그러므로 임의중재에서는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선정이나 교체를 하지 못했을 경우 중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할 “중재인 선정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지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중재지 법원이 필요한 선임과 교체를 할 수도 있다(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중재조항에서 중재인 선정기관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사무총장이 중재인 선정기관을 지정한다).
32. 중재인 선정기관은 중재기관, 법원, 사업자 단체, 해당 직업중사자협회 기타 독립적 기관이 될 수 있다. (개인은 선정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청 받았을 때 이를 수행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개인보다는 직책이나 직함(예를 들어, 중재기관의 장, 법원의 법원장, 사업자 단체나 해당 직업중사자협회의 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당사자들은 선정된 기관이 요청을 받았을 때 중재인 선임이나 교체 임무를 수행을 수락할 것이라는 점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33. 중재인 선임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중재절차 초반에 상당한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한은 중재규칙에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한 규칙을 준용하는데 합의한 당사자들은 그 규칙에 정해진 선임절차와 달리 규정하고자 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이 중재규칙을 원용하는데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조항 자체에 그러한 기한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4. 중재판정부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경우 중재 절차가 한참 진행된 중요한 시점(예. 중재인들 간의 합의 중)에 1인의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협조를 거부하거나 다른 이유로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중재인의 교체는 절차에 지나친 지연이나 혼란을 초래하므로 중재인의 교체를 시도할 여지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수권 받은 바 없다면 나머지 2인의 중재인이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판정을 내릴 수 없게 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중재 규칙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머지 2인이 ‘분할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중재규칙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선택된 중재규칙이 그러한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분할된’ 중재판정부가 절차진행을 계속하여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재조항에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권고조항:*

35. 기관중재를 선택하였고 그 기관 규칙이 중재인 선임과 교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1차적으로 이를 행하도록 규정하지 않지만,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스스로 선임하기를 원할 경우 다음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하며, 이 중 첫 번째 중재인은 중재신청서에서 신청인이 선정한 자, 두 번째 중재인은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선정한 자, [의장 또는 의장중재인] 역할을 수행할 세 번째 중재인은 두 번째 중재인 선정 후 [30]일 이내에 양당사자가 선정한 자로 한다. 전술한 기한 내에 중재인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당해 기관]이 해당 중재인을 선임한다. 중재인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전술한 바와 동일하게 교체를 행한다.

36. 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중재를 선택하였을 경우 당사자들은 UNCITRAL 중재규칙 등 임의중재규칙을 선택하여 중재인의 선임 및 교체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37. 중재규칙이 없는 임의중재를 위하여 앞서 제안된 조항(상기 13항 참조)은 3인 판정부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교체하는 종합적인 장치를 규정하며 중재절차를 방해하거나 불참하는 중재인이 있을 경우 그를 제외하고 구성된 분할된 중재판정부가 절차를 진행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38. 비슷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단독중재인에 의한 분쟁해결을 원할 경우 당사자들은 위 13항에 제안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중재인의 수는 1인으로 하며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선정한다.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된 중재인 선정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지침 7: 당사자들은 중재에 사용될 언어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해설:*

39. 당사자들의 언어가 서로 다르거나, 당사자들의 공통된 언어가 중재지 언어와 다를 경우 중재에 사용될 언어를 중재조항에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중재언어를 선택할 때 당사자들은 계약서 및 관련 문서가 어느 언어로 되어 있는지 뿐만이 아니라 중재언어의 선택이 중재인이나 변호인이 될 자의 인력 풀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중재조항이 중재에 사용될 언어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중재인이 이를 결정한다. 중재인은 계약서가 작성된 언어를 선택하거나 당사자들이 주고 받은 서신이 작성된 언어가 계약서와 다를 경우, 서신작성에 사용된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결정을 중재인에게 맡기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과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40. 계약서 작성자들은 흔히 하나 이상의 중재언어를 정하고 싶어한다. 당사자들은 그래도 좋을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 복수 언어로 중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영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사용하여 진행된 중재절차 사례는 많다) 선택된 언어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개 언어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중재인들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고 번역과 통역의 필요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하고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 1개의 중재언어를 명시하되 문서의 경우에는 (번역본 없이) 다른 언어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다.

*권고조항:*

41. 중재에 사용될 언어는 [...]로 한다.

*지침 8: 보통의 경우 당사자들은 계약 및 그 후 분쟁에 대한 준거법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해설:*

42. 국제거래에서는 당사자들이 계약 및 그 후 분쟁에 대한 준거법(“실체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43. 실체법의 선택은 중재조항과는 별개의 조항에 명시하거나 당해 조항이 2개 목적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여(예. 조항 제목을 “준거법 및 중재[또는 분쟁해결]”로 하여) 같은 조항에서 중재와 함께 규정할 수 있다. 중재분쟁과 관계없이 계약의 이행 중 실체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4. 당사자들은 실체법을 선택함으로써 절차법이나 중재법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법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지법에 따른다(위 21항 참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45. 당사자들이 실체법으로 특정국가의 법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신에 상거래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원칙(*lex mercatoria*)과 같이 특정 국가와는 무관한 법칙(a-national rules of law)을 선택하기도 한다. 중재판정부에게 공정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분쟁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ex aequo et bono*). 그러한 선택을 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러한 선택이 적절할 수 있으나(예. 당사자들이 특정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할 수 없을 때), 준거법의 내용이나 판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하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특정국가의 법 대신 위와 같은 대안을 선택하였을 경우 중재인들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규칙을 적용할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분쟁해결이 보다 복잡·불확실해지며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권고조항:*

46. 실체법 선택을 위하여 다음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본 계약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이나 법규]에 따라 규율되며 본 계약에서 기인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이나 법규]에 따라 해결된다.

### III. 추가적 선택사항에 대한 작성지침

47. 중재는 합의에 근거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들은 중재조항에서 그들의 특수한 필요에 맞게 중재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많은 선택사항이 있는바, 본 장에서는 중재조항 협상 중 당사자들이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선택사항들을 본 지침이 제시한다고 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중재조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 *선택안 1: 임시적 조치 및 보전적 조치에 관한 중재판정부 및 법원의 권한*

*해설:*

48. 대부분의 경우 중재판정부나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 및 법원 모두가 본안에 대한 결정에 앞서 임시적 조치 및 보전적 조치를 명할 권한이 있음을 중재조항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중재조항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을지라도 일정한 조건하에 중재판정부 및 법원이 그러한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중재규칙 및 관련 중재법에 따라 다르다. 법원의 권한은 관련 중재법에 따라 결정된다.

49. 그러나 적용될 중재법이 임시적 구제나 보전적 구제를 제한할 때 또는 임시적 구제나 보전적 구제가 특별히 필요한 때(예. 영업상의 비밀이나 기타 비밀정보가 연관된 경우) 중재판정부와 법원의 권한을 중재조항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50. 임시적 구제나 보전적 구제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은 이를 제한하는 준거 중재규칙의 조항을 수정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재기관규칙에 따라서는 중재판정부가 선임되고 나면 당사자들이 법원에 임시적 구제나 보전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될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분쟁 대상 사안”에 대하여 임시적 구제 및 보전적 구제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이 현재 처한 상태를 보전하거나(예. 처분명령, 중재비용의 담보) 중재절차의 보호(예. 동결명령, 소송중지명령)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해진다.

*권고조항:*

51. 다음 조항을 사용하여 잠정적 구제 및 보전적 구제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명시할 수 있다:

본 계약에서 특별히 달리 제한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보전적 구제(conservatory relief) 및 처분적 구제(injunctive relief) 등 잠정적인지 또는 확정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가 명한 조치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치의 대상에 대한 최종판정으로 간주되어 집행할 수 있다.

52.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잠정적 조치 및 보전적 조치를 법원에 구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 조항을 위 조항에 추가하거나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각 당사자들은 관할법원에 중재 전 압류나 가처분 등 잠정적 구제 및/또는 보전적 구제를 신청할 권리를 보유하며 그러한 신청은

중재합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재에 대한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53.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당사자들이 법원에 잠정적 구제 및 보전적 구제를 구할 권리를 제한하기 위하여 위 51항의 권고조항에 다음 조항을 추가하거나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중재 전 압류나 가처분 등 잠정적 구제나 보전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은 중재합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재에 대한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잠정적 구제나 보전적 구제 신청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전속관할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명한 조치는 관할법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54. 중재판정부가 일방당사자의 신청에 기하여 명하는(*ex parte*) 잠정적 구제가 필요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들은 이를 명시하고 “잠정적”이라는 문언 뒤에 그러한 문구(“일방당사자의 신청 만에 기하여”라는 표현을 포함)를 추가하여 위 51항의 권고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추가를 한다고 하여도 일방당사자의 신청에 기하여 중재판정부가 명한 구제조치는 관련 중재법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 선택안 2: 문서제출명령

### 해설:

55. 국제중재에서 문서제출이나 정보교환 명령이 이루어지는 정도는 사건별로 다르고 중재인마다 다르지만, 분쟁에 연관되거나 중대하다고 소명된 특정문서(내부 문서 포함)를 제출할 의무가 당사자들에게 있는 것이 보통이다. 몇몇 관할지에서 이루어지는 “증거개시”의 특징인 사전증인신문(depositions) 및 질문서절차 (interrogatories)는 통상 행하지 않는다. 국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표준적 관행을 반영하여 국제중재에서의 증거 조사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규칙(“IBA증거규칙”)을 만들었다. 종이문서와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제출을 모두 다루고 있는 위 규칙은 국제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명시적·묵시적 지침으로 흔히 활용된다.

56. 당사자들은 정보나 문서제출에 관하여 세 개의 주요한 선택 가능 방안이 있다. 첫째,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보통 그러한 문제를 중재인들의 재량에 맡기는 준거 중재법상 기본 규정에 의할 수 있다. 둘째, IBA증거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셋째, (광범위한 증거개시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당사자들 스스로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7. 국제중재의 문서제출명령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특정 문서에 대하여 당사자가 누리는 특권으로 인하여 제출 예외가 인정될지를 결정함에 있어 어떤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향후 특권 문제가 발생하여 중대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이런 경우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규율할 원칙을 중재조항에서 특정하기를 원할 수 있다. IBA증거규칙 제9조는 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권고조항:*

58. IBA증거규칙을 의무적인 기준으로 원용하고자 하거나 지침 목적으로만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부여된 권한에 덧붙여] 중재판정부는 [본 계약 체결일/중재개시일 현재 유효한] 국제중재에서의 증거 조사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규칙[에 따라][을 지침으로 하여] 문서 제출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

59. 당사자들이 증거개시와 관련하여 누리는 거부특권을 규율할 원칙을 특정하기를 원한다면 다음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문서나 통신이 당사자가 누리는 특권의 보호대상이므로 중재에서 서류 제출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는 모두 국제중재에서의 증거 조사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선택안 3: 비밀유지문제

해설:

60.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와 관련된 비밀이 유지될 것으로 흔히 가정한다.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많은 관할지에서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의 존재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는 없다. 당사자들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국내법이나 중재규칙은 거의 없다.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의무에는 많은 예외가 있다.
61. 그러므로 비밀유지를 염려하는 당사자들은 중재조항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한다. 법률에 의하여 또는 차후 사법절차에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또는 판정을 집행하거나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공개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또한 자신의 청구, 항변, 반대청구 준비 중 비당사자(증인 및 전문가)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수 있음을 예상하여야 한다.
62. 한편, 중재절차의 비밀이 유지될 것이라고 흔히 전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비밀유지의무에 구속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중재조항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권고조항:

63. 중재 규칙들 중에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는 것들도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그러한 규칙에 따라 중재하기로 합의할 경우 이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과하게 된다.
64. 다음 조항은 당사자들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다.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은 중재절차의 존재와 내용 및 판단이나 판정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i) 법원이나 기타 사법기관이 진행하는 소송절차에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거나, 법적 권리를 보호받거나 행사하거나, 판정을 집행하거나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ii)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을 때, (iii) 본건 중재에서 청구나 항변을 준비하거나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iv) 당해 정보가 본건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경우, 또는 (v)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명령한 경우.

65. 당사자들이 비밀유지의무의 구속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다음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른 중재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단, 강행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선택안 4: 비용 및 수수료의 배분

##### 해설:

66. 국제중재에 드는 비용(예. 중재인 수당과 비용 및 기관 수수료가 있을 경우, 그 수수료)과 변호사보수가 상당할 수 있다. 중재절차가 끝났을 때 중재판정부가 이러한 비용과 수수료를 배분할지와 어떻게 배분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국가별로 접근방식은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경우에서부터 승리한 당사자가 완전히 회수하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며 중재인들은 그러한 면에서 광범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67.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은 중재조항에서 비용 및 수수료 문제를 다루기를 원할 수 있다(다만 그러한 규정은 관할지에 따라서는 집행이 불가능 할 수 있다). 당사자들에게 여러 선택안이 있다. 중재인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비용 및 수수료를 배분할 수 있다는 점을 당사자들이 단순히 확인할 수 있다. 중재인들은 비용과 수수료 배분에 대한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사자들이 정할 수도 있다. 본안에 대하여 이긴 측이 비용과 수수료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승리나 패배한 비율에 따라 비용과 수수료가 배분되도록 중재인이 결정하도록 당사자들이 약정해 볼 수도 있다. ‘승리’하거나 ‘우세’한 판정을 받은 측을 확연히 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비용 및 수수료의 배분에 있어 중재인들에게 불필요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조항을 작성할 때 당사자들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표현(“하여야 한다”)은 피하는 것이 좋다.

68. 국제중재에서 분쟁 당사자의 경영진, 사내 변호사, 전문가 및 증인들이 들인 시간에 대하여 보상할지 여부가 불확실할 때가 많으므로 당사자들은 이러한 보상을 허용할 지 여부도 고려할 수 있다.

*권고조항:*

69. 중재인들이 비용과 수수료 모두를 배분할 재량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지정된 중재규칙이 그러한 취지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러한 재량권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변호사보수[및 당사자의 경영진, 사내변호사, 전문가 및 증인 비용]를 포함한 비용을 어느 당사자에게 배분할지에 대한 결정을 중재 판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70. 다음 조항은 승리한 측이 비용을 회수하도록 규정한다: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재량으로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비용을 결정하고 승소한 측이 이를 회수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71. 다음 조항은 성공 비율에 따라 비용이 배분되도록 규정한다: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변호사보수[및 당사자의 경영진, 사내 변호사, 전문가 및 증인 비용]를 포함한 비용을 어느 당사자에게 부담시킬지에 대한 결정을 판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한 배분을 할 때 중재판정부는 청구, 반대청구 및 방어에서 당사자들이 승리한 비율을 고려한다.

72. 중재인들이 비용 및 수수료를 당사자들 간에 배분하지 않도록 할 때 다음 조항을 사용한다:



중재판정부[및 중재기관]의 비용 일체는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자신의 사건을 준비하고 제시하는데 소요된 비용 일체(자신의 변호사, 전문가, 증인과 관련된 비용 포함)를 각자 부담한다.

### 선택안 5: 중재인의 자격

#### 해설:

73. 국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비하여 중재의 장점은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고를 수 있어 분쟁과 관련된 전문성 또는 지식을 갖춘 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74. 그러나, 중재조항에 중재인의 자격을 특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당사자들은 통상 분쟁시점에 이르러 전문성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보다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각 당사자들은 그때그때 원하는 자격을 갖춘 중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중재조항에 자격요건을 특정하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중재인 후보단을 현저히 줄일 수도 있다. 나아가, 중재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7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중재조항에 그러한 자격요건을 특정하고자 한다면, 지나치게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피하는 것이 좋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자격요건도 충족하고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유도 있는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 중재합의를 강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76. 당사자들은 단독중재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의 경우 의장중재인이, 어느 당사자와도 동일한 국적이 아닐 것을 특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관중재의 경우, 중재기관은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관행에 따라 중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자격요건은 대부분 불필요하다. 그러나 임의중재의 경우, 당사자들은 이점을 중재조항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권고조항:

77. 중재인의 자격은 중재조항에 다음사항을 추가하여 명시할 수 있다:

[각 중재인은] [의장중재인은] [변호사/회계사]이어야 한다.

또는

[각 중재인은] [의장중재인장은][특정분야]에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는

[각 중재인은] [의장중재인은] 어느 당사자와도 동일한 국적이어서는 안된다.

### 선택안 6: 기한

#### 해설:

78. 당사자들은 간혹 중재개시 시점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중재판정이 내려지도록 중재조항에 규정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고 노력한다(이러한 과정은 ‘신속절차 (fast-tracking)’라고도 한다). 신속절차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지만, 중재조항을 작성할 당시 계약상 발생할 모든 분쟁이 규정된 기한 내에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 지 당사자들이 알기는 어렵다. 중재판정이 규정된 기한 내에 내려지지 못할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이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9. 이러한 고려사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중재조항에서 기한을 정하고자 한다면, 집행불능인 중재판정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재판정부에게 이와 같은 기한을 연장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 권고조항:

80. 기한을 정하고자 할 때 다음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은 [단독중재인][의장중재인]의 선임으로부터 [...]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단, 정의의 요청을 감안하여 또는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이러한 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중재판정부가 이유를 달아 결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택안 7: 중재의 중국성

해설:

81. 중재의 장점은 중재판정은 중국적이며 항소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관할지에서 중재판정에 대하여는 관할권의 부존재,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또는 불공정을 이유로만 다룰 수 있고, 본안 판단에 대한 심사를 할 수는 없다. 대다수의 중재규칙은 중재판정은 중국적이고 당사자들은 그에 대한 여하한 불복수단을 포기한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중재의 중국성을 강화하고 있다.
82. 중재조항이 특정 중재규칙을 원용하고 있지 않거나 원용된 중재규칙이 중국성 및 불복수단 포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중재조항 자체에 중재판정은 중국적이고 불복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러한 규정이 포함된 중재규칙을 당사자들이 원용하는 경우에도, 중재에 비우호적인 관할지에서 중재판정이 집행되어야 하거나 중재판정이 별도로 심사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중재조항에서 반복하여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중재조항에 불복수단 포기조항을 추가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포기하는 대상의 범위와 해당 중재법상 필요한 용어를 결정하기 위하여 중재지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3. 당사자들은 예컨대 본안에 대한 심사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법적 심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추천할 바가 못되고, 당사자들의 의사로 그리할 수 없는 경우도 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사법적 심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중재지법 또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권고조항:

84. 당사자들이 중재의 중국성을 강조하고 중재판정에 대한 일체의 불복수단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중재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중재조항에 추가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은 당사자들에 대하여 종국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당사자들은 중재판정을 지체 없이 전부 이행하기로 약정하며, 모든 형태의 불복수단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85. 예외적인 경우로서, 당사자들이 사법적 심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본안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관할지에서 그와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그러한 합의가 강행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당사자들은 [선택된 관할지]에서 1심법원의 판단을 상급심이 심사하는데 적용되는 심사기준에 따라 동 관할지의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구할 권리가 있다.

#### IV. 다층적 분쟁해결조항 작성지침

86. 국제계약의 분쟁해결조항에서 중재에 앞서는 예비절차로서 협상, 조정 또는 다른 형태의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가 흔하다. 예컨대 건설도급계약은 분쟁이 중재에 회부되기 전에 상설 분쟁해결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다층적(multi-tier)조항으로 알려진 이러한 조항들은 그 작성에 있어 특수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다층적 조항 지침 1: 특정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예. 서면요청)으로 개시되는 협상기간 또는 조정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이 경과되면 어느 당사자든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점을 조항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해설:*

87. 중재 전에 협상 또는 조정을 요구하는 다층적 조항은 중재에 앞서 충족되어야 할 선행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기타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협상 또는 조정을 이용할 위협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항은 대체로 짧은 협상/조정 기간을 특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간 경과 후에는 분쟁이 중재에 회부될 수 있어야 한다. 기간을 특정함에 있어 당사자들은 협상 또는 조정을 개시하는 것이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을 중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88. 협상기간 또는 조정기간은 예컨대 해당 조항에 따라 협상 또는 조정을 하자는 서면요청 또는 조정인의 선임과 같이 특정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으로 개시되어야 한다. 분쟁에 대한 서면통지를 절차를 개시하는 사건으로 정하는 것은 분쟁에 대한 단순한 서면 의견교환만으로 기간이 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할 바가 되지 못한다.

*권고조항:*

89. 아래 94-96항의 권고조항을 참조할 것.

*다층적 조항지침 2: 조항은 중재를 의무사항이 아닌 가능사항으로 규정하는 합정을 피하여야 한다.*

*해설:*

90. 다층적 분쟁해결 조항을 작성하는 당사자들은 협상 또는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중재에 회부하겠다는 의사를 의도치 않게 불분명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당사자들이 협상 또는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에 회부 “할 수 있다(may)”고 규정할 때 발생한다.

91. 아래 94-96항의 권고조항을 참조할 것.

*다층적 지침 3: 조항은 협상 또는 조정에 회부될 분쟁과 중재에 회부될 분쟁을 동일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해설:*

92. 다층적 분쟁해결 조항들은 첫 단계인 협상 또는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과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을 각각 다른 용어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불분명하게 규정할 경우, 어떤 분쟁은 첫 단계로서 협상 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
93. 아래 제시된 권고조항에서 ‘분쟁들’이라고 넓게 규정한 것은 반대청구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대청구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중재에서 당장 제기될 수 없을 것이다. 당사자들이 반대청구를 중재에서 곧바로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자 한다면, 중재조항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고조항:*

94. 다음 조항은 첫 단계로서 협상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존부, 효력,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서 기인하거나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협상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당사자 일방이 이 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협상을 요청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다른 기간이 경과하도록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지정된 중재규칙]에 따라 위 규칙에 의하여 선임된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된다. 중재지는 [도시, 국가]이다. 중재에 사용될 언어는 [...]로 한다.

[협상과정 중 모든 통신은 기밀로 유지하고, 증거규칙이나 그 외 법률상 규정된 기밀유지 또는 업무상 비밀 보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타협 및 화해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한다.]

95. 다음 조항은 첫 단계로 조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규정한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존부, 효력,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서 기인하거나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지정된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조정인의 선임 후 [45]일 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다른 기간 내에 위 규칙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지정된 중재규칙]에 따라 위 규칙에 의하여 선임된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된다. 중재지는 [도시, 국가]이다. 중재에 사용될 언어는 [...]로 한다.

[조정과정 중 모든 통신은 기밀로 유지하고, 증거규칙이나 그 외 법률상 규정된 기밀유지 또는 업무상 비밀 보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타협 및 화해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한다.]

96. 다음 조항은 중재 전에 반드시 협상과 조정을 순차적으로 거칠 것을 규정한다:

본 계약의 존부, 효력,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서 기인하거나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분쟁’)은 아래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고, 이것은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절차이다.

(A) 협상

당사자들은 모든 분쟁을 [본 계약의 관리 또는 이행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들보다 상급의 경영진에 해당하고]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 경영진간의 협상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B) 조정

일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문단 (A)에 따른 협상을 요청한 후 [30]일 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다른 기간 내에 문단 (A)에 따른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지정된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한다.

(C) 중재

조정인이 선임된 후 [45]일 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다른 기간 내에 문단 (B)에 따른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지정된 중재 규칙]에 의하여 선임된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위 규칙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지는 [...]이다. 중재에 사용될 언어는 [...]로 한다.

[문단 (A)와 (B)에 따른 협상 및 조정 과정 중 모든 통신은 기밀로 유지하고, 증거규칙이나 그외 법률상 규정된 기밀 유지 또는 업무상 비밀 보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타협 및 화해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한다.]

## V. 다수당사자 중재조항 작성지침

97. 국제계약에는 흔히 둘 이상의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는 수가 많다. 이러한 계약을 위하여 중재조항을 작성하는 자들은 다수당사자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한 어려움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중재기관의 표준조항은 통상적으로 쌍방 당사자를 상정하여 작성되어 다수당사자가 있는 상황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다수당사자 지침 1: 조항은 다수당사자의 존재가 중재판정부를 선임함에 있어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

*해설:*

98. 당사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각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임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당사자들이 단독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만족한다면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다: 단독중재인을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선임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관 또는 중재인 선정기관에 의하여 선임되도록 규정하면 된다. 3인의 중재인이 선임되어야 할



경우, 3인의 중재인을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선임하거나, 중재인 모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기관 또는 중재인 선정기관에 의하여 선임되도록 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99. 다른 방편으로, 중재조항은 각 ‘측 (side)’의 당사자들이 공동하여 중재인을 선임을 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계약당사자들이 일치된 이해관계를 가질 것으로 중재조항 작성단계에서 예상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선택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중재인 선임절차에서 각 당사자들이 모두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한 측에 속한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이 중재인 선임에 대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중재기관 또는 중재인 선정기관은 *모든* 중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 측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중재인을 선임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반면, 다른 측의 당사자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몇몇 중재기관의 규칙에서 채택된 해결방법이다.

100.아래 105항의 권고조항은 다수당사자가 있는 상황에서 중재인을 선임하는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다수당사자 지침 2: 조항은 다수당사자의 존재로부터 발생하는 절차적 복잡성(중재절차참가 및 당사자의 추가)을 다루어야 한다.*

*해설:*

101.다수당사자가 있을 경우 절차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절차참가(intervention)이다: 계약의 당사자가 중재조항에 따라 개시된 중재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중재절차에 참가하고자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당사자의 추가(joinder)이다: 피신청인으로 지목된 계약당사자는 그렇게 지목된 바 없는 계약의 다른 당사자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고자 할 수 있다.

102.중재조항이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다루지 않더라도 그 조항으로 중재가 가능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절차의 중복, 상충되는 결정 및 이에 따른 지연, 비용 및 불확실성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이다.

103.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 쉬운 방법은 없다. 사안별로 해당 상황을 고려하여 다수당사자 중재조항은 신중히 작성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대강의 원칙으로서, 중재조항에 따라 개시된 여하한 절차는 모든 계약당사자에게 비록 그들 중에는 피신청인으로 지목되지 않은 자가 있더라도 통지되도록 중재조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지 후에는 각 계약당사자가 절차에 참가하거나 다른 계약당사자를 중재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규정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중재인이 선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04. 다른 방안으로,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참가와 당사자추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기관의 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해당 중재기관에 중재절차참가와 당사자추가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부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권고조항:*

105. 다음 조항은 동일한 계약의 나머지 당사자들의 중재절차참가 및 당사자추가를 규정하고 있다:

본 계약의 존부, 효력,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서 기인하거나,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지정된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된다. 단, 당사자들은 본 계약 또는 별도의 상호 합의로 중재규칙을 수정할 수 있다.

중재지는 [도시, 국가]이다. 중재에 사용될 언어는 [...]로 한다. 중재인은 3명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선임된다.

중재신청서가 1인의 신청인과 1인의 피신청인만을 지정하고, 어느 당사자도 아래 기술한 바에 따라 당사자추가 또는 중재절차참가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당사자들의 중재절차참가 또는 당사자추가 권리 행사 기간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각 중재인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규정된 바와 같이

중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중재기관]이 당해 중재인을 선임한다. 2인의 중재인은 의장중재인 될 세 번째 중재인을 선임한다. 두 번째 중재인이 선임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2인의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된 중재기관/중재인 선정기관]이 의장중재인을 선임한다.

중재신청서에 2인 이상의 당사자가 명명되거나 아래 항들에 따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계약당사자가 당사자추가 또는 중재절차참가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공동으로 중재인 1인을 선임하고 피신청인(들)은 공동으로 다른 1인의 중재인을 선임한다. 위 선임은 당사자들이 당사자추가 또는 중재절차참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들이 위에 규정된 바와 같이 중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된 중재기관/중재인 선정기관]은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인 3인을 모두 선임하고, 그 중 한 명을 의장중재인으로 지정한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이 위에 규정된 바와 같이 중재인을 선임하는 경우, 2인의 중재인은 의장중재인이 될 세 번째 중재인을 선임한다. 두 번째 중재인이 선임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2인의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된 중재기관/중재인 선정기관]이 의장중재인을 선임한다.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단독으로 또는 본 계약의 다른 당사자와 함께 본 계약의 다른 모든 당사자들[및 지정된 중재기관이 있는 경우 그 기관]에 중재신청서를 발송함으로써 이 조항에 따른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청구, 반대신청 또는 교차청구의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중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단, 통지는 이러한 참가당사자가 관련 중재신청, 청구, 반대청구 또는 교차청구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계약의 다른 모든 당사자들[및 지정된 중재기관이 있는 경우 그 기관]에게도 발송되어야 한다.

중재신청, 청구, 반대청구 또는 교차청구통지에서 피신청인으로 명명된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여하한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청구,

반대청구 또는 교차청구의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중재절차에 그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다. 단, 통지는 이러한 피신청인이 관련 중재신청, 청구, 반대청구 또는 교차청구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본 계약의 다른 모든 당사자들[및 지정된 중재기관이 있는 경우 그 기관]에게도 발송되어야 한다.

당사자로 추가되거나 중재절차에 참가한 당사자는 비록 중재절차에 관여하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도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에 구속된다.

## VI. 다수계약 중재조항에 대한 작성지침

106. 하나의 국제거래가 여러 개의 상호 관련된 계약들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하다. 다수계약 상황에서의 중재조항 작성은 특수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다수계약 지침 1: 상호 관련된 계약들의 중재조항들은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해설:*

107. 당사자들은 장래의 분쟁이 세분화되는(예, 각 중재가 다른 중재규칙에 의거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간 상호 관련된 계약에서 서로 다른 분쟁해결 절차를 명시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 계약에 따라 선임된 중재판정부는 두 번째 계약에 관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에 대하여 판단할 관할권이 없을 수 있고, 이 경우 복수의 절차가 병렬적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

108. 당사자들이 일관된 결정을 원하고 복수의 절차가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사태를 피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간명한 해법은 별도의 분쟁해결 규약을 만들어 모든 당사자의 서명을 받고 모든 관련계약에서 원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면, 당사자들은 상호 연관된 계약들의 중재조항들이 동일하거나 상호보완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들 중재조항들이 동일한 중재규칙, 중재지 및 중재인 숫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절차가 병합될 경우 어려움이 생겨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실체법 및 중재에 사용될 언어 또한 동일하게 지정되는 것이 좋다. 어느 한 계약에 따라 선임된 중재판정부는 다른 상호 연관된 계약과 관련되는 쟁점에 대하여도 판단을 내릴 관할권이 있음을 당사자들은 명백히 하는 것이 좋다.

109. 당사자들이 별도의 분쟁해결 규약을 만들지 못하거나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음 조항이 각 상호 관련된 계약의 중재조항에 추가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계약(들)]에 따라 선임된 중재판정부가 본 계약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계약(들)]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

*다수계약 지침 2: 당사자들은 상호 관련된 계약들에 따라 각각 개시된 중재절차들의 병합에 관하여 규정할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110. 다수계약 상황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복잡성 중 하나로 병합의 문제가 있다. 상호 관련된 계약에 따라 서로 다른 중재절차가 서로 다른 시기에 개시될 수 있다. 이들 중재를 하나의 병합된 중재에서 다루는 것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할 수도,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로 통합된 중재가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당사자들이 판단할 수 있다. 또 다른 상황에서는 각 중재절차를 별도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111. 연관된 중재사건들의 병합을 허용하기를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이를 중재조항에 명시하여야 한다. 관할지에 따라서는 법원이 연관된 중재절차의 통합을 명할 재량을 가지지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다면 보통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중재지 법원들이 그러한 권한이 없거나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법원의 재량에 맡기기를 원치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연관된 중재절차를 병합하는 절차 또한 중재조항에 명시하여야 한다. 적용될 중재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 및 중재지의 법은 중재절차를 병합할 당사자들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반대로, 관할지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이 병합(또는 집단중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를 원할 수 있다.

112. 상호 관련된 계약이 둘 이상의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당사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중재절차의 병합에 관한 조항을 작성하는 일은 특히 복잡하다. 당연히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각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임에 대하여 동등하게 취급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적이지는 않으나 활용 가능한 하나의 해결방안은 모든 중재인 선임이 중재기관 또는 중재인 선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관할지에서 따라서는 병합조항이 집단소송 중재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 있음도 인지하여야 한다.

*권고조항:*

113. 아래 조항은 동일한 양당사자들 사이에 상호 관련된 중재절차들의 병합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 및/또는 [상호 관련된 계약]에 따라 개시된 중재절차들의 병합에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2건 이상의 중재가 본 계약 및/또는 [상호 관련된 계약]에 따라 개시될 경우, 그 중 어느 중재에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된 당사자는 이들 중재절차들에서 선임된 중재판정부들 중 어느 한 곳에게 복수의 중재절차들을 하나로 병합하여 당해 판정부가 판정하도록 하는 명령(‘병합명령’)을 구할 수 있다. 병합명령을 내릴 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중재판정부는 복수의 중재들이 공통된 법적, 사실적 쟁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복수의 중재를 병합하는 것이 정의와 효율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어느 중재판정부가 다른 중재절차에 대하여 병합명령을 내리기 전에 그 다른 중재에서 중재인들이 이미 선임되었다면, 그들의 임명은 병합명령과 동시에 해지되고 그들은 임무를 완수한(functus officio)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해지는 (i) 해지에 앞서 그들이 행한 행위 또는 내린 명령의 유효성 (ii) 적정한 중재인 보수 및 지출비용을 지급받을 권리 (iii)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중단을 적용하기 위한 여하한 청구 또는 방어가 제기된 일자 (iv) 해지 전에 제출되어 채택이 가능한 증거(이러한 증거는 병합명령 후의 중재절차에서도 채택이 가능함) (v) 해지 전에 발생한 법률비용 기타 비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상충되는 병합명령이 있을 경우, 먼저 이루어진 병합명령이 우선한다.